

2018 주요 업무보고

2018. 11. 2.

재 무 국

I. 일반 현황

조직 · 인력

6과 35팀 236명/232명 (정/현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8명 별도(재무과 2, 38세금징수과 6)

기능

과 별	주요 업무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관리, 지출·계약, 세입·세출 결산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확대 등
자산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세입·세출 예산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A)	2017년도 (B)	‘17년 예산액 대비 증감	
			금액(C=A-B)	증감률(C/B)
계	17,704,559	16,148,381	1,556,178	9.6
시 세	17,096,474	15,555,376	1,541,098	9.9
세 외 수 입 (시 전체)	608,085 (1,285,052)	593,005 (1,162,084)	15,080 (122,968)	2.5 (10.6)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증감 내역	
			금액	비율
계	2,453,833	2,270,883	182,650	8.1
인 력 운 영 비 (통합편성비)	710,652	676,514	34,138	5.0
기 본 경 비	1,986	1,910	76	4.0
사 업 비	119,651	103,814	15,837	15.3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5,281	1,915	3,366	175.8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94,973	83,343	11,150	13.4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97	79	18	22.3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953	112	17	15.5
시세입 목표달성	9,727	10,282	△556	△5.4
조세정의 실현	7,621	8,082	△461	△5.7
타 기관 지원	1,621,544	1,488,645	132,899	8.9
자치구 교부금(재정보전금)	1,197,593	1,110,656	86,937	7.8
자치구 교부금(시세징수교부금)	419,907	377,990	41,917	11.1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044	-	4,044	-

재산 현황 (市)

(2017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m ²)	동 수	면 적(천 m ²)
계	58,323	104,635	57,296	9,930
행 정 재 산	56,152	103,269	2,629	4,768
일 반 재 산	2,171	1,366	54,667	5,162

II. 정책목표 및 방향

목표

신뢰받는 재무행정으로 경제시정 구현

정책
과
제

안정적
세입확보로
튼튼한
재정기반 마련

1. 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
2.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3. 정부 재정분권 강화 정책 적극 대응
4.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제개선 및 비과세·감면 축소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
재무행정 추진

실
천
과
제

1. 효율적 시금고 지정·운영으로 안정적 자금관리
2.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재무행정 제공
3.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
4. 주요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1. 계약심사 제도개선으로 품질향상·신속발주 지원
2. 민·관 협업을 통한 공사원가 산정기준 정비
3. 공공계약의 전문성·청렴성 강화

시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 강화

1. 시 필요재산 적극 취득 및 효율적 관리
2. 시유재산 관리강화를 한 수익성 제고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정적 세입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2.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 재무행정 추진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4. 시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 강화

1. 안정적 세입확보로 튼튼한 재정기반 마련

1-1 市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

1-2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1-3 정부 재정분권 강화 정책 적극 대응

1-4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제개선 및 비과세·감면 축소

1-1 市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

부동산·경제동향 등 세입여건 분석과 체계적인 세수관리를 통한 징수 활동 전개로 징수목표 달성

'18년 시세 세입목표 : 17조 965억원(전년대비 1조 5,411억원 증가)

추진 실적('18.8월 현재) : 징수액 12조 9,140억원(진도율 75.5%)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A)	(점유비)	징수액 (B)	(점유비)	진도율 (B/A)	'17년 동기	
						징수액	진도율
계	170,965	(100.0)	129,140	(100.0)	(75.5)	120,356	(77.4)
취 득 세	43,946	(25.7)	34,922	(27.0)	(79.5)	36,982	(92.3)
지방소득세	48,483	(28.4)	45,527	(35.3)	(93.9)	37,416	(88.5)
자 동 차 세	11,016	(6.4)	8,850	(6.9)	(80.3)	7,577	(68.6)
지방소비세	12,127	(7.1)	10,897	(8.4)	(89.9)	10,135	(96.0)
기 타 시 세	55,393	(32.4)	28,944	(22.4)	(52.3)	28,246	(54.2)

- 경제동향 및 정부정책 등 세입여건 분석 및 **세입징수 종합계획 수립·시행**
 - 정부 부동산 정책, 국제 동향, 민간소비 및 이자율 등 경제여건 분석
 - 세목별 징수여건 분석, 월별 징수목표 등을 고려 세입징수 종합계획 수립
- 세입징수 목표 달성 위한 시·구 합동 대책회의 등 징수 실효성 제고
 - 정보 공유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시·구 합동 대책회의 개최('18. 4월, 9월)
- 체계적 과세자료 관리 및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
 - 자동차세(5월), 주민세(7월) 등 정기분 과세대상 정비 및 직무교육 실시(10회)
-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정기분 과세시, 신고납부시 등에 적극 납부 홍보
 - 홍보포스터, 보도자료,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납부 홍보

향후 계획

- 자동차세 징수율(12월 정기분) 제고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및 홍보
-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자문위원회' 개최

1-2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체납관리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 징수율 향상 도모

□ '18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 : 2,366억원

- '17년 목표 2,332억원 대비 33억원(1.5%) 증가

□ 추진 실적('18.8월 현재) : 징수액 1,651억원(진도율 69.8%)

-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및 선제적 징수활동 시행
 - 과세단계부터 체납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송달 및 조기 채권확보 철저
 - 법인 및 2억 이상 고액체납 시세 별도관리 전담팀 운영 등 체납 징수방식 개선
-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집중정리로 징수활동 강화
 - 번호판 영치 업무 효율성 제고, 강제전인 및 공매 강화
 - 시·구·경찰청 합동단속 정례화(5월, 10월) 및 대포차량 집중 추적
- 시·자치구 간 동반자적 징수체계 구축 및 체납징수협력 강화
 - 시·구 체납시세 합동징수 TF팀 운영, 체납징수 우수사례·노하우 등 공유
-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 운영 활성화
 - 「은닉재산 제보센터」 전담창구 지속 운영 및 홍보 강화
- 징수실적 및 노력도에 비례한 포상금 지급 개선방안 마련
 -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 등 연계·반영

□ 향후 계획

- '18년도 하반기 시세 체납징수 중점 추진 : '18. 9~12월
- 체납 징수 활동 강화 및 가택수색, 검찰고발, 행정제재 등 : 연중

1-3 정부 재정분권 강화정책 적극 대응

정부 공약사항인 재정분권 강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시의 실질적 재정책총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추진 배경

- 정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발표('17.7.)
 -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 8:2를 단기적 7:3 거쳐 장기적 6:4 수준까지 개선(국정과제 75번)

□ 정부동향 및 부처입장

- 지방분권위원회 내 **범정부 재정분권 TF 구성**('17.11.)
 - TF는 기재부, 행안부, 지방협의회, 전문가로 구성, 매주 비공개 회의 진행
- 정부 TF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기재부와 행안부 입장 차이 존재**
 - 행안부는 국세의 지방 이양, 기재부는 기존 이전재원의 지방세 전환에 중점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18.9.11)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확대 추진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개편안 마련(~19년), 국세·지방세 합리적 조정(~'22)

□ 우리시 대응 방향

- **재정분권의 기본원칙 견지**(지방 재정자주권확보,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지자체 주도의 지방재정조정)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실행계획 수립**

〈 그동안 추진내용 〉

- ▶ 「재정분권 TF」 재무국·기조실 공동 운영('17.8월~)
- ▶ 서울특별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기조실) 등 지속 수행
- ※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한 축이므로 기조실에서 총괄하고, 세제분야는 재무국이 공동 대응

□ 향후 계획

- 정부 종합계획에 맞추어 기조실과 협조하여 市 차원 대응 : '18.9월~

1-4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및 비과세·감면 축소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제도개선 건의로 세원발굴은 물론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정 축소 등 세입확충 도모

추진 방향

- 자주 세원 증대 및 지방자치분권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조정

추진 실적

- ① **(세원발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환원 등 세원확대 추진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개별소비세 등 세원확대 타당성 관련 연구용역 추진('18.1월)
- ② **(법령개정)** 불합리한 지방세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 '18.2월
 - 고액주택 상속 취득 시 세율특례 적용 강화
 - 해외 거주기간 중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소멸시효 정지 신설
 - 아동보육 등 지원을 위한 아동 일시보호시설 등 감면 개선
- ③ **(감면축소)** 건실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감면 단계적 축소·유지
 - 단기적('18년) 13% 이하, 장기('20년) 10% 이하로 축소 추진
 - 일몰예정 조문은 원칙적 종료, 경제활성화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시 감면율과 감면기간 축소 등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18년 행안부 주관 지방세감면통합심사(5, 6월)에 참여하여 우리시 의견 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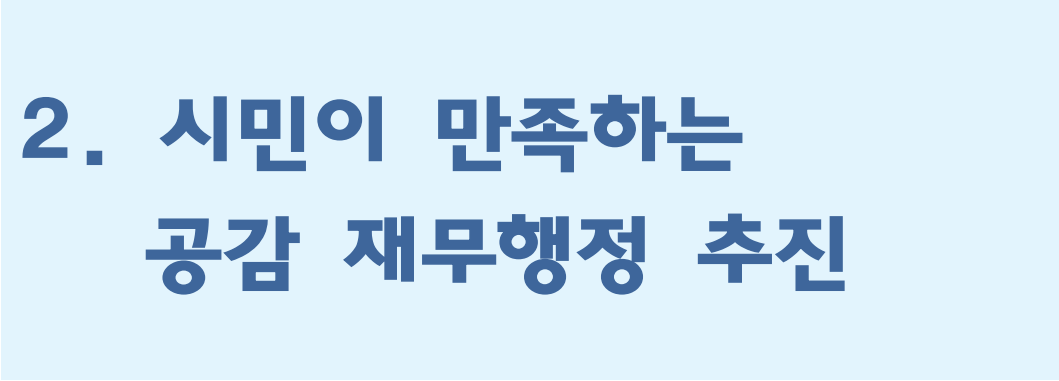

향후 계획

- 지방세관련 법령 개정안 국회 제출(행안부) : '18.10~12월

세무 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8.9.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세 제 과	1,199,531,136	442,588,956	442,588,956	36.9	36.9	1,199,531,136	100.0
재정보전금	1,197,593,382	440,676,884	440,676,884	36.8	36.8	1,197,593,382	10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04,400	80,768	80,768	77.4	77.4	104,400	100.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000	10,000	10,000	100.0	100.0	10,000	100.0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1,823,354	1,821,304	1,821,304	99.9	99.9	1,823,354	100.0
세 무 과	428,226,072	349,482,747	348,305,797	81.6	81.3	428,202,168	99.9
시세징수교부금	419,906,628	341,621,447	341,621,447	81.4	81.4	419,906,628	100.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531,000	278,966	278,966	52.5	52.5	531,000	100.0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87,000	166,552	166,552	89.1	89.1	187,000	100.0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000	30,000	30,000	100.0	100.0	30,000	10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130,000	58,328	58,328	44.9	44.9	130,000	100.0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000	5,000,000	5,000,000	100.0	100.0	5,000,000	10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577,409	1,496,000	741,700	94.8	47.0	1,564,100	99.2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45,165	43,000	21,500	95.2	47.6	44,050	97.5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 영 및 유지보수	818,870	788,454	387,304	96.3	47.3	809,390	98.8
38세금징수과	7,621,032	4,816,144	4,816,144	63.2	63.2	7,269,210	95.4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19,432	1,240,670	1,240,670	55.9	55.9	1,887,610	85.0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5,100,890	3,407,183	3,407,183	66.8	66.8	5,100,890	100.0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13,200	13,200	13,200	100.0	100.0	13,200	10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87,510	155,092	155,092	53.9	53.9	267,510	93.0



2.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 재무행정 추진

2-1 효율적 시금고 지정·운영으로 안정적 자금관리

2-2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재무행정 제공

2-3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

2-4 주요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2-1 효율적 시금고 지정·운영으로 안정적 자금관리

공정한 절차를 거쳐 차기 시금고를 선정하고, 시금고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인계인수 철저로 안정적 금고운영

차기 시금고 운영 개요

- 금고은행 : 신한은행(1금고 : 일반·특별회계) · 우리은행(2금고 : 기금)
- 운영기간 : 2019. 1. 1 ~ 2022. 12. 31(4년)
- 약정조건
 - 금 리 : 공금예금(신한 1.52%, 우리 1.71%)
정기예금(신한 2.37%, 우리 2.38%) * '18년 6월 기준 12개월 약정시
 - 출 연 금 : 총 4,115억(신한 3,015억, 우리 1,100억)
- 자금규모 : 33조 ~ 35조원 ※ '18년 예산 33조(일반 22조, 특별 9조, 기금 2조)
- 금고기능
 - 세입업무 : 서울시 세입금 수납처리 및 금융결제원 수납센터 역할
 - 지출업무 : 일반·특별회계·기금 및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관리
 - 자금관리 : 지급준비금은 공금예금,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운용

추진 경위

- 시금고 지정계획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18. 3~4월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우선지정 대상기관 선정 : '18. 5월
- 금고업무 취급약정 체결 : '18. 6.18
- 전산시스템 인계인수 및 안정적 구축을 위한 T/F 구성·운영 : '18. 6월~
- 시금고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 ~'18.10월

향후 계획

- 시금고 인수인계 및 전산시스템 테스트 및 검증 : '18. 11월~
※ 2019.1.1일부터 전산시스템 정상 운영

2-2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재무행정 제공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서비스, 체납 영세사업자 경제적 재기 지원, 우수 희망기업 발굴 및 판로지원 강화 등 다양한 서민 경제활동 지원사업 추진

맞춤형 세무상담서비스(마을세무사) 확대운영

운영 개요

- 사업내용 :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와 마을(동)을 연결, 시민들에게 세무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 활동인원 : 241개동 246명('17)→ 358개동 331명('18)



추진 경과

- 세무사 재능기부와 연계한 지자체 최초 민관세정협력사업 시행('15.1.)
 - 총 상담('15~'17) : 9,959건('15년 2,168건, '16년 3,749건, '17년 4,042건)
- 서울시 사례 벤치마킹, 마을세무사 제도 전국 확대 시행('16.6. 행안부)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제정·시행('17.3.)

추진 실적

- 마을세무사 규모 확대로 대시민 세무상담서비스 기반 확대
 - 시민의 상담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운영 동 및 세무사 확충(246명 → 331명)
 - 총상담 2,847건(9월말 현재): 국세 2,791건, 지방세 56건
-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방문 세무상담서비스' 운영 강화
 - 노인복지관 등 현장상담이 필요한 소외계층 관련 기관 방문 상담
 - '찾아가는 서울시청'(신속행정담당관)에 참여, 복지사·법무사 등과 협업 현장상담
- SNS 등 영상매체와 시·자치구가 연계하는 다각적 홍보 및 소통 강화
 - SNS(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 옥외전광판, 세금고지서, 찾아가는 응답소 등

향후 계획

- 제3기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및 현장 방문상담 실시 : 연중

체납 영세사업자 경제적 재기 지속 지원

사업 개요

-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회생지원을 위해 신용불량 및 관허사업 제한 해제
- 소액 금융자산, 장기 미운행 차량, 실익 없는 장기압류 채권 등 압류해제

추진 실적('18.8월 현재)

- 영세사업자 등 경제적 회생 지원 : 3,048명, 체납액 384억원
- 소액예금 및 장기압류 채권 등 압류 해제 : 44,385명, 체납액 2,498억원

향후 계획(지속추진)

- 영세사업자 등록 신용정보 및 관허사업제한 해제, 체납처분 유예
 - 분납이행서 등을 통한 납부의지와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
- 경제적 재기를 위해 소액예금,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 압류해제
 - 150만원 미만 금융자산, 11년 이상 승용 · 12년 이상 화물 자동차 등
-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채권 및 무체재산권(특허권 등) 압류해제

우수 희망기업 발굴 및 판로지원 강화

사업 개요

- 희망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우수 희망기업을 발굴 · 홍보함으로써 우수 희망기업에 대한 판로 확대 및 지원 강화
 - ※ 희망기업 :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

추진 실적

- 희망기업 제품구매의 지속적 확대 및 실적관리 강화
 - 목표 : 4조7,810억원('16년)→ 5조9,776억원('17년)→ 6조5,116억원('18년)
 - 목표설정에서 실적관리까지 소관부서(사회적경제담당관 등)과 체계적 역할분담 · 수행
- 「희망기업제품 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 및 참여 홍보
 - 만족도 조사 내용 등 매뉴얼 제작 및 서울계약마당 내 조사 시스템 구축

향후 계획

- 희망기업제품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18. 10월
- 만족도 우수 희망기업 대상 홍보 실시 : '18. 11월

2-3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 추진 배경

- 현행 조례는 유공납세자 지원사항인 ‘공영주차장의 1년간 주차요금’만을 규정, 본인 소유는 아니나 실제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지원에 혼란
- 모범납세자 선정시 서울시 지방세 체납 등은 확인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 지방세 체납이 있음에도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

〈 모범납세자 등 선정 〉

- ▶ 모범 : 최근 10년간 체납 없이, 매년 2건 이상 지방세, 8년간 납기 내 납부('18년 223천명)
- ▶ 유공 : 모범납세자 중 市 재정 운영에 공적이 있어 자치구 추천 받아 선정('18년 191명)

□ 추진 실적

- 모범납세자 선정시 지방세 체납확인 범위를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등 선정 기준을 강화
-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혜택이 본인 차량 소유여부에 따라 차별되지 않고 실제 운영차량은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차량규정 명확화
- 추진 경과
 - 조례개정 등 방침수립 및 입법예고 심사의뢰: '18. 7. 24.
 -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 상정: '18. 9. 4.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18. 9. 21.

□ 향후 계획

- 조례안 제284회 임시회 상정: '18. 11월
- 모범납세자 조례·규칙 공포: '19. 1월

2-4 주요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시책사업 준비 단계부터 조세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정 누수 방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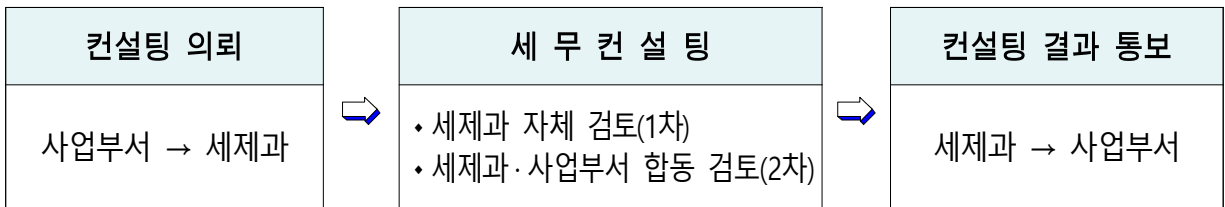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시책사업과 관련된 조세 문제를 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전 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정 누수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필요
 - ※ 민간기업은 사업추진 시 세금 관련 제반법률 및 세금부담 부분 필수 검토
- 市 시책사업 추진 시 세금문제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추징 사례 발생

취득세를 감면받은 민간어린이집이 시 정책에 동참하여 2년 이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결정으로 민원 발생

□ 추진 내용

- (컨설팅 주요내용) 시책사업 수립 단계부터 국세·지방세 관련 과세여부 자문 등 **세무컨설팅 서비스 지원과 사후 조세불복 자문**
 - 취득세 등 지방세와 부가세 등 국세에 대해 '18.2월부터 자문 개시
- (컨설팅 상시화) 세무컨설팅을 위한 전담 전문인력 배치(임기제 1명) 및 전 부서 **신규·민간 관련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세무컨설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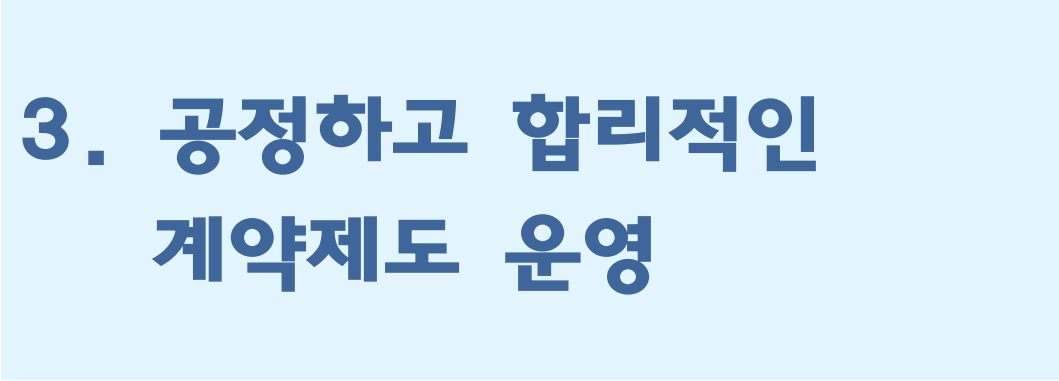

□ 향후 계획

- 전 부서 대상 컨설팅 수요조사 및 컨설팅 시행 : '18. 연중
- 세무컨설팅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 : '18. 12월

재무행정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8.9.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재 무 과	4,899,999	1,766,290	1,763,990	36.0	36.0	4,874,882	99.5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4,629,377	1,532,457	1,530,157	33.1	33.1	4,615,003	99.7
2017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30,569	193,780	193,780	84.0	84.0	219,826	95.3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0,053	40,053	40,053	100.0	100.0	40,053	1000
세 제 과	4,059,387	3,020,168	3,020,168	74.4	74.4	4,059,387	100.0
마을세무사 운영	15,400	15,400	15,400	100.0	100.0	15,400	100.0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4,043,987	3,004,768	3,004,768	74.3	74.3	4,043,987	100.0
세 무 과	1,407,060	938,622	918,692	66.7	65.3	1,323,134	94.0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14,165	638,242	638,242	78.4	78.4	730,239	89.7
상시세금 납부 체제 구축	182,254	54,533	34,603	29.9	19.0	182,254	100.0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410,641	245,847	245,847	59.9	59.9	410,641	100.0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3-1 계약심사 제도개선으로 품질향상·신속발주 지원

3-2 민·관 협업을 통한 공사원가 산정기준 정비

3-3 공공계약의 전문성·청렴성 강화

3-1 계약심사 제도개선으로 품질향상·신속발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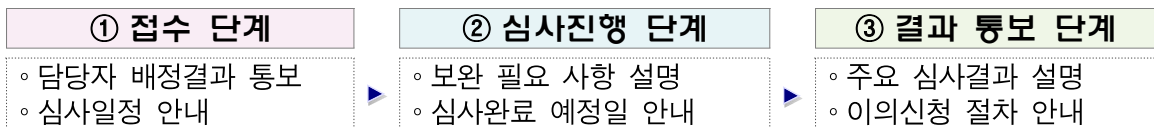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현장 만족도 향상방안 추진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및 설계품질 향상

□ 추진 개요

-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및 ‘계약심사 처리 매뉴얼’ 제정 (‘18.1 ~ 2월)
 -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계약심사 면제대상 확대 등 절차간소화 추진
 - ‘설계경제성 심사’와 ‘계약심사’ 통합운영, ‘맞춤형 설계 자문’ 등 건설공사 품질 제고
- 계약심사 제도개선에 따른 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18.5.1.~ 6.8, 354명)
 - 응답자 92%가 효과성 있는 것으로 답변
 - 심사 진행상황 안내 등 발주부서와 소통강화 등의 보완 필요 의견 대두
- ‘계약심사의 현장만족도 향상방안’ 수립·시행 (‘18.7.4,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단계별 진행상황 안내서비스’ 실시
 - ‘설계경제성 심사’ 절차 개선, ‘원가계산 실무교육’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 등

□ 추진 성과

- 심사절차 간소화로 공사분야 **심사기간 5.2일 단축**(11.7일 ⇒ 6.5일), **신속발주 지원**
 -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180건, ‘설계경제성 심사’와 ‘계약심사’ 통합실시 8건 등
- 원가계산 역량 지원 등을 통한 **설계의 품질 향상**
 - ‘맞춤형 설계자문’ 실시(11건)로 서류보완요구율 21.1% 감축 (39.3%⇒18.2%)
 - 사업유형별·기관별 교육수요별 맞춤형 교육으로 ‘원가계산 실무교육’ 개선
 - ▶ 교육시기 조정(연1회→분기별 1회), 교육방식 다양화(강의식→강의식+워크숍+컨설팅) 등
- 계약심사 과정에서 발주부서와의 소통강화로 계약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①접수단계 ⇒ ②심사진행단계 ⇒ ③결과통보 ‘단계별 진행상황 안내서비스’ 실시(543회) 등



□ 향후 계획

- 일괄신청 통합심사·맞춤형 설계자문 등 절차간소화 방안 확대 실시 : ‘19. 1월

3-2 민·관 협업을 통한 공사원가 산정기준 정비

지나친 원가절감 위주의 계약심사 방식 탈피, 민·관·연 협업방식으로 안전·품질 향상을 지향하는 원가산정 기준 보완

□ 추진 배경

- 노동시간 단축, 도심할증 요인 증가 등 변화된 건설현장 여건 반영 필요
- 최근 지진·화재사고 등으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안전·이용편의 등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 중심으로 변화

□ 추진 내용

- 서울형품셈 보완·발전계획 수립('18.5.31)
 - 민·관 협업방식의 품셈 정비, 안전·시공품질 향상 중심 신규 개발추진 등
- 서울형품셈 보완·검증을 위한 「민·관 합동 TF」 구성('18.6.4.)
 - 건설관련 협회·발주부서·계약심사 전문관 등이 참여하여 4개 분과 47명으로 구성
- 「민·관 합동 TF」 운영 및 서울형품셈 검증(총 23회) 실시('18.6.~7월)
 - 기존 서울형품셈 88건에 대한 재정비 및 신규품셈 개발 제안(2건)
 - 1차 전체회의(6.14.), 4개 분과별 검증 TF 운영(11회), 합동 현장실사(11회) 등
- 검증 TF 운영결과 심의를 위한 원가분석자문회의 개최('18. 8.24.)
 - 원가분석자문위원, 분과별 TF 위원 등 24명이 참석하여 TF 검증결과 조치방안 심의

□ 정비 결과 : 현행유지 46건(52%), 보완 23건(26%), 폐지 19건(22%)

- 안전성 강화(4건), 시공비 현실화(8건), 시공품질 향상(11건) 등 23건 보완
 - 최근3년간 활용실적 1건 이하(10건), 표준품셈 등 대체가능(9건) 등 19건 폐지
- ※ 평가결과가 우수한 품셈 등 46건은 현행유지



□ 향후 계획

- 신규품셈(15건) 개발 완료 : '18.12월
- 서울형품셈 증보판 발간 등 전국 확산 추진 : '19. 1월

3-3 공공계약의 전문성·청렴성 강화

계약담당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공공 계약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계약 관련 시민만족도 제고

□ 추진 방향

- 공개경쟁 계약 문화 정착 및 서울시·계약상대자간 동반자적 관계 구축
- 계약의 일관성·신속성 제고를 위한 계약담당공무원 전문가화

□ 추진 실적

- 경희대 「공공계약 전문가 양성과정」 2차 과정 개설·운영('18.6월)

- 본청·사업소 계약 담당 공무원대상,
총 15시간 교육(17명 수료)

※ '17년 1차 과정실시 : 22명 수료

- 계약 법령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 판례분석, 쟁점사항, 최근 이슈 등 사례 위주의 문제해결형 교육



<공공계약 전문가 양성 과정>

- '18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액 상향 조정(재무회계규칙 개정, '18.1월~)

- (기존)최대 4천만 원 ⇒ ('18년)최대 2억 원

- 서울시 인재개발원 「계약실무과정」 신규 개설·실시('18년 11월)

- 시·구·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대상, 연 1회 교육
- 4과목 14시간 운영

※ 개설 과목 : 계약제도 일반, 계약절차별 실무, 계약관련 감사 지적사례, 판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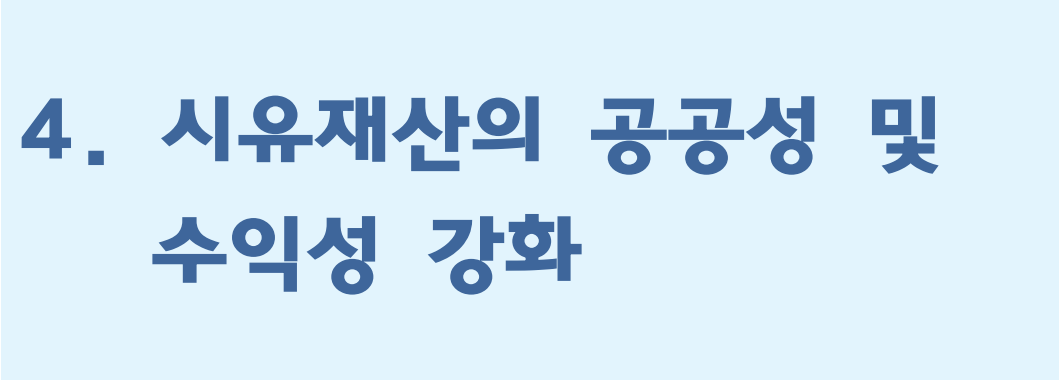

□ 향후 계획

- 서울시 인재개발원 「계약실무과정」 실시 : '18.11월

계약 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8.9.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산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산액	집행률
재무과	380,610	327,580	282,100	86.1	74.1	368,073	96.7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0,484	13,500	13,500	65.9	65.9	20,095	98.1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98,000	69,080	69,080	70.5	70.5	98,000	100.0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262,126	245,000	199,520	93.5	76.1	249,978	95.4
계약심사과	97,020	70,500	70,500	72.7	72.7	87,256	89.9
계약심사 업무추진	61,150	47,500	47,500	77.7	77.7	54,973	89.9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5,870	23,000	23,000	64.1	64.1	32,283	90.0



4. 사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 강화



4-1 市 필요재산 적극 취득 및 효율적 관리

4-2 사유재산 관리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4-1 市 필요재산 적극 취득 및 효율적 관리

정책사업 추진 시 필요한 부지를 시 소유로 확보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지원하고, 시유지 집단화 및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재산관리 도모

□ 사업 개요

- 기동본부, 잠실운동장 및 임정기념관 부지 등 소유권 정리로 **주요사업 적극 지원**
 - (國) 동대문 기동본부 ↔ (市) 서초소방학교·적선동주차장 부지 소유권 정리
 - 잠실운동장 부지(잠실동 10) 내 기재부 소유지분 취득을 위한 소송 추진
 - (市) 임정기념관 건립부지 ↔ (國) 중랑물재생센터 등 시 청사점유지 교환
- 주요시설 내 산재된 **시유지 집단화**로 재산가치 제고 및 관리효율화 실현
 - 축척·지목 등이 달라 합병하지 못했던 시유지를 확정측량을 통해 단일필지로 정리
- 부동산 전문기관 활용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별 적정 관리방안 마련

□ 추진 실적

- ① **(주요재산 취득)** 기재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전략적 협상 추진
 - 동대문 기동본부 이전을 위해 기획재정부·경찰청과 대체부지 등 협의 중
 - 잠실운동장 부지 취득 관련 소송 진행('17.12 市 제소, '18.5.1차 변론, '18.10. 2차변론)
 - 임정기념관 건립부지 교환계획 수립('18.6),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18.9)
- ② **(시유지 집단화)** 계획수립 및 대상지 선정, 확정측량 시행 등 사업 추진
 - 창포원생태공원 등 '18년 사업추진 대상지 선정 및 현장 정밀 조사('18.5)
 - 사업대상지(5개소) 지적확정측량 의뢰(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18.9)
- ③ **(정밀 실태조사)** 사업계획 수립('18.4),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18.6), 조사대상 재산 중 시유 일반재산(토지) 측량 진행 중('18.10~)

※ 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업기간 : '18.6~12월

□ 향후 계획

- 서울기동본부 및 잠실운동장 부지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속
-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 교환계약 체결 : '18.11월
- 2018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사업 완료 : ~'18.12월

4-2 시유재산 관리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매각대상 시유재산을 적기에 매각하고,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 및 위탁관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 재정확충 기여

□ 사업 개요

- 매각 대상 **시유재산의 적기 매각** 추진을 통한 세외수입 제고
 -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 내 시유지 및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적기 매각
- 변상금 등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효율적 재산관리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시유재산 위탁관리 내실화**

〈 시유재산 위탁관리 개요 〉

-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 위탁기간 : '18.7.1.~'21.6.30.(3년)
- ▶ 위탁사무 : 시유재산 관리·처분 사무
- ▶ 위탁재산 : 일반재산 1,072건, 392천㎡

□ 추진 실적

-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 내 시유지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 부지 매각 추진
 - 고덕·강일지구 275억원('18.5), 원지동 의료시설부지 2차분납금 288억('18.3) 등
 - '18년 제1·2차 공개매각 추진('18.4/'18.9) : 낙찰 5건, 2,239㎡, 1,024백만원
- 재산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노력 다각화
 - 「시유재산 세외수입 체납정리 계획」 수립·시행('18.4.)
 - ▶ 자치구·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체납실태 분석 및 징수실적 평가
 - 독촉·체납고지 일제발송, 수시 현장방문 및 납부독려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시유재산 위탁관리 기관 선정('18.6) 및 전문적 재산관리를 통한 세입 확충
 - 시유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성과평가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18.1~5)
 - 매각·대부·변상금 등 위탁재산 수입실적('18.7~8) : 1,396백만원

□ 향후 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유재산 위탁 관리·처분 실적 정산 : '18.11월
- 「시유재산 세외수입 체납 정리계획」 추진실적 최종보고 : ~'19.1월

재산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8.9.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자산관리과	94,972,913	91,054,837	90,508,432	95.9	95.3	94,948,506	99.9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90,737,647	88,713,133	88,701,788	97.8	97.8	90,737,647	100.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3,809,859	1,940,704	1,606,144	50.9	42.2	3,809,859	100.0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25,407	401,000	200,500	94.3	47.1	401,000	94.3

IV. 세입·세출 예산 현황 및 전망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18.8.30. 기준)

구 분	'18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진도율 (C/A*100)	'18년말 수납예상액	
					수납액(D)	징수율(%) (D/A*100)
계	17,704,559	14,358,205	13,084,304	73.9	17,850,050	100.8
시 세	17,096,474	14,180,332	12,913,983	75.5	17,641,596	103.2
세 외 수 입	608,085	177,873	170,321	28.0	208,454	34.3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18.9.30. 기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합 계	2,453,833,378	1,401,178,111	1,399,343,716	57.1	57.0	2,425,586,484	98.8
사업예산(계)	1,741,195,229	894,065,845	892,274,780	51.3	51.2	1,740,663,752	99.9
재 무 과	5,280,609	2,093,870	2,046,090	39.7	38.7	5,242,955	99.3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4,629,377	1,532,457	1,530,157	33.1	33.1	4,615,003	99.7
2017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30,569	193,780	193,780	84.0	84.0	219,826	95.3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0,053	40,053	40,053	100.0	100.0	40,053	100.0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0,484	13,500	13,500	65.9	65.9	20,095	98.1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98,000	69,080	69,080	70.5	70.5	98,000	100.0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262,126	245,000	199,520	93.5	76.1	249,978	95.4
자산관리과	94,972,913	91,054,837	90,508,432	95.9	95.3	94,948,506	99.9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90,737,647	88,713,133	88,701,788	97.80	97.8	90,737,647	100.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3,809,859	1,940,704	1,606,144	50.90	42.2	3,809,859	100.0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25,407	401,000	200,500	94.30	47.1	401,000	94.3
계약심사과	97,020	70,500	70,500	72.7	72.7	87,256	89.9
계약심사 업무추진	61,150	47,500	47,500	77.7	77.7	54,973	89.9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5,870	23,000	23,000	64.1	64.1	32,283	90.0

구 분	예산현액	집행현황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산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산액	집행률
세 제 과	1,203,590,523	445,609,124	445,609,124	37.0	37.0	1,203,590,523	100.0
재정보전금	1,197,593,382	440,676,884	440,676,884	36.8	36.8	1,197,593,382	100.0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4,043,987	3,004,768	3,004,768	74.3	74.3	4,043,987	10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04,400	80,768	80,768	77.4	77.4	104,400	100.0
마을세무사 운영	15,400	15,400	15,400	100.0	100.0	15,400	100.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000	10,000	10,000	100.0	100.0	10,000	100.0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1,823,354	1,821,304	1,821,304	99.9	99.9	1,823,354	100.0
세 무 과	429,633,132	350,421,369	349,224,489	81.6	81.3	429,525,302	99.9
시세징수교부금	419,906,628	341,621,447	341,621,447	81.4	81.4	419,906,628	100.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531,000	278,966	278,966	52.5	52.5	531,000	100.0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14,165	638,242	638,242	78.4	78.4	730,239	89.7
상시세금 납부 체제 구축	182,254	54,533	34,603	29.9	19.0	182,254	100.0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87,000	166,552	166,552	89.1	89.1	187,000	100.0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410,641	245,847	245,847	59.9	59.9	410,641	100.0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000	30,000	30,000	100.0	100.0	30,000	10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130,000	58,328	58,328	44.9	44.9	130,000	100.0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000	5,000,000	5,000,000	100.0	100.0	5,000,000	10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577,409	1,496,000	741,700	94.8	47.0	1,564,100	99.2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45,165	43,000	21,500	95.2	47.6	44,050	97.5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18,870	788,454	387,304	96.3	47.3	809,390	98.8
38세금징수과	7,621,032	4,816,145	4,816,145	63.2	63.2	7,269,210	95.4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19,432	1,240,670	1,240,670	55.9	55.9	1,887,610	85.0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5,100,890	3,407,183	3,407,183	66.8	66.8	5,100,890	100.0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13,200	13,200	13,200	100.0	100.0	13,200	10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87,510	155,092	155,092	53.9	53.9	267,510	93.0
행정운영경비(계)	712,638,149	507,112,266	507,068,936	71.2	71.2	684,922,732	96.1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10,651,733	505,757,237	505,731,757	71.2	71.2	682,936,316	96.1
기본경비	1,986,416	1,355,029	1,337,179	68.2	67.3	1,986,416	100.0

V.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1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1	18	13	-	-
	시정· 처리요구사항	23	13	10	-	-
	건의사항	5	2	3	-	-
	기타(자료제출 등)	3	3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징수에 전력을 다할 것.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체납액(현년도 포함)이 1조원을 상회함에 따라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및 적정 수준의 결손처분 시행으로 체납규모 1조원 미만 유지에 역량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15년 13,025억원 → '16년 12,299억원 → '17년 11,249억원 ○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으로 조세정의 구현(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력징수 「고액 체납시세 특별징수 전담 T/F팀」 구성 - 상·하반기 특별 체납정리기간 설정·운영 - 체납 징수방식 개선(별도 고액체납전담팀 운영 등) -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 체납자 가택수색 및 언론홍보, 행정제재 강화로 징수율 제고 - 시·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일제 실시 -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 징수실적 저조한 자치구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합리적 체납처분 집행으로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 자동차세 체납징수 특별추진계획: '18.3월 ○ 서울경찰청 합동단속 추진계획: '18.5월 ○ 하반기 체납시세 총력징수 추진계획: '18.8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구 합동 체납징수 대책회의 개최: 10월 ○ 체납정리 중점 정리기간 운영: 10~11월 ○ 자치구 체납징수실태 지도점검: 10월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재무국 소속 공무원들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수당을 받고 외부강의를 하고 있음. 외부강의로 인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국 외부강의 운영 개선방안수립·시행: '17.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 횟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 · 강의개시 3일 전까지 외부강의 사전신고 확행 - 주말 및 근무 시간 외를 이용한 외부강의 권고 ○ 재무국 외부강의 운영 개선방안 교육 실시 : '18.2월
<p>○ 외국인 체납 관련 뚜렷한 해소 방안을 마련 할 것.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정착을 위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 도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29.부터 38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 실시 ○ 외국인에 대하여는 지방세 과세 단계부터 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체납을 방지하고,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한 외국인 납세 풍토 조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지원시설(다문화센터, 외국인고용지원센터 등)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모임 시 지방세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 집중홍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영세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방안 및 대책을 마련 할 것.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사업자가 경제활동의 의지가 있는 경우, 사업재기가 가능하도록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제 조치 해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불량등록 해제 및 관허사업제한 보류 등 - 장기 압류 소액예금 및 차령 초과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 장기 압류 무체재산권 및 일반채권 중 실효성 없는 채권 해제 -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감안, 지원 전(前) 사전상담을 통해 납부의지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분납계획서 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납 미이행시, 납부독려 강화 및 즉시 행정제제 조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체납자에 대한 지원 지속 시행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과태료, 과징금 징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철저히 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현황 및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의 최근 3년간 과태료 징수율(59.5%) 및 과징금 징수율(48.6%)은 전국 평균징수율(과태료 57.4%, 과징금 44.5%)에 비하여 높은 편임 ○ 과태료, 과징금은 조세채권에 비해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태료 등의 징수율 제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회의를 통한 시·자치구 총력 징수 - 세외수입교육, 운영실적 평가, 지도점검 강화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담당직원 교육: '18.11월 ○ 세외수입 지도점검: '18. 11~12월 ○ 세외수입 운영 실적평가: '18.9~11월 ○ 세외수입 관허사업제한 및 명단공개: '18.12월
<p>○ 두 차례에 걸친 서울의료원 매각 실패로 인하여 매년 평균 5천억원의 막대한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으로 13억원의 매물비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는 '15~'16년 매수자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유관 부서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16.9.)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15.7, '17.12.) 등 법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개매각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음. ○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는 「공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수수료가 발생한 것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전자고지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하여, 매년 시민이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 소멸되고 있으므로, 전자 납부 시민의 계좌에 마일리지 전액을 이체해 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고지 및 납부 시 건당 500원 또는 1,000원의 마일리지 지급하고 있으며, 마일리지로 지방세 납부, 불우이웃돕기 기부, 본인계좌 송금 등이 가능함. ○ 다만, 마일리지 소유자에게 직접 계좌 송금하는 방법은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 납세자의 마일리지 사용방법 선택에 제한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납세자 모두에게 ETAX · STAX 등을 통해 년 3회 이상 (문자 3회, 이메일 3회) 안내하여 마일리지 소멸 최소화
<p>○ 시효결손에 대한 객관적·공정성 확보를 위해 결손검토위원회 구성 등 절차 마련 필요.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효결손 처분위원회’를 통한 시효 결손시 공정성·객관성 확보는 가능하나, 시효결손은 이미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결손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납세의무는 소멸된 것이므로 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실익이 없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조사는 물론, 가족명의 은닉재산, 위장이혼 등 여부를 정밀 조사하여 시효소멸 체납액 감소에 적극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렌터카 관련 서울시의 세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렌터카 차고지 감면비율 상향(70% → 90%)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건의: '17.3월, '18.1월(→국토부) ○ 도시철도공채 매입면제 추진(3% →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안 발의: '17.7월(김용석의원) - 시의회 교통위원회 미상정: '17.9월~ ○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 개정(소유자 → 이용자)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개정 건의: '17.6월(→행안부) - 자동차등록규칙상 사용본거지 개정 건의: '17.11월(→국토부) - 중앙-지방간 정책협의회 건의: '17.12월(→행안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개정 지속 건의 : 연중 ○ 도시철도공채조례 공채 매입율 조정 검토·협의 : 연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2016년 말 현재 시세 체납액이 1조 2,299억원 인 바,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규모의 지속적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체납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시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 ○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력징수 「고액 체납시세 특별징수 전담 T/F팀」 구성 - 상·하반기 특별 체납정리기간 설정·운영 - 체납 징수방식 개선(별도 고액체납전담팀 운영 등) -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 체납자 가택수색 및 언론홍보 강화, 행정제재 강화로 징수율 제고 - 시·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관영치 및 견인 일제 실시 -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 징수실적 저조한 자치구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원 ○ 자동차세 체납징수 특별추진계획: '18.3월 ○ 서울경찰청 합동단속 추진계획: '18.5월 ○ 하반기 체납시세 총력징수 추진계획: '18.8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구 합동 체납징수 대책회의 개최: '18.10월 ○ 체납정리 중점 정리기간 운영: '18.10~11월 ○ 자치구 체납징수실태 지도점검: '18.10월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8.11월 ○ 압류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 규모를 줄여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유공납세자 지원 관련 조례 대로 유공납세자 본인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운영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 타인에게 양도 가능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공납세자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는 관련 조례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 배우자 등 차량까지 면제 - 법인 : 유공납세자 중 리스 이용 중인 경우 해당차량 면제 ○ 따라서,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동거가족 차량 또는 유공납세자 명의로 대여한 리스차량 등 차량 한 대에 한해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 중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개정 추진 : '18.11월까지 ○ 조례 공포(예정) : '19. 1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상습적·악의적 고액채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강구해서 보고 할 것.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적·악의적 고액채납자에 대하여 가용 가능한 징수방법을 최대한 적용하여 체납징수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강화 및 검찰고발 - 호화생활자, 사회저명인사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강화 - 무재산자는 철저히 재산은닉, 위장위혼 등 거주지 조사 - 총력징수 「고액 체납시세 특별징수 전담 T/F팀」 구성 ○ '18년도 체납징수 대책 계획 수립: '18.2월 ○ 자동차세 체납징수 특별추진계획: '18.3월 ○ 서울경찰청 합동단속 추진계획: '18.5월 ○ 하반기 체납시세 총력징수 추진계획: '18.8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8.11월 ○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강화 : 연중 ○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을 통해 징수실적 거양 노력
<p>○ 시유재산 임대내역을 전수 조사 하여 기준 마련 및 부당 사용 회수 등 활용 방안 마련하여 보고할 것.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각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 : '17.5.1.~11.30. ○ 시유재산 임대 시 대부료는 「공유재산법」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료 요율 : 공유재산법시행령 제31조 및 조례 제26조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을 통한 '2018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 추진으로 주요재산 활용방안 및 재산별 적정 관리방안 마련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매년 서울시의 고액체납자 징수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타지자체와 비교시 지방세 징수율이 서울시만 압도적으로 꼴찌인 현황. 또한 서울시 고액체납자 관리에서도 강남구와 강북구의 관리차이가 존재함. 강북구에 비해 강남구의 징수실적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 이므로 시정조치 바람.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기업 집중화에 따른 부도·폐업된 법인이 증가하여 국제인 소득세 등에 10%가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체납이 누증되고, 자치구별(강남·강북)로도 지방소득세 규모가 클수록 징수율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시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총력징수 체계 운영 및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징수활동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3구의 호화주택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현장수색 강화 - 강남3구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강화 - 체납처분, 동산압류, 검찰고발, 행정제재 등 징수활동 연중 실시 - 시·구 체납시세 합동징수 강화로 동반자적 협업체계 구축 - 자치구 체납정리실태 점검 및 의견수렴 ○ '18년도 체납징수 대책 계획 수립: '18.2월 ○ 자동차세 체납징수 특별추진계획: '18.3월 ○ 서울경찰청 합동단속 추진계획: '18.5월 ○ 하반기 체납시세 총력징수 추진계획: '18.8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징수율 향상 대책 강력 전개를 통한 총력징수 체계로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지방세 관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고액체납 징수대책은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음. 또한 시세세원발굴지원 예산의 불용률도 해마다 높은 상황임. 지방세 관리와 시세세원발굴지원은 재무국의 핵심 업무임. 하지만 징수 비율이나 불용률을 보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통렬한 자기반성과 비판 대안이 있어야하며 특단의 대책 필요(인천시 사례 활용).</p> <p>(38세금징수과,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조세정의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력징수 「고액 체납시세 특별징수 전담 T/F팀」 구성 - 상·하반기 특별 체납정리기간 설정·운영 - 체납 징수방식 개선(별도 고액체납전담팀 운영 등) -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 체납자 가택수색 및 언론홍보 강화, 행정제재 강화로 징수율 제고 - 시·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일제 실시 -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 징수실적 저조한 자치구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합리적 체납처분 집행으로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 '17년 시세 세원 발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및 기획 세무조사 실시 (211건, 332억원 추정) - 13개 자치구 지도점검 완료 (146건, 67억원 추정) ※ 25개 자치구는 457건 371억원 추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법에서 정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음 ○ 시세 세원 발굴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세무조사 공무원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세무조사 교육과정 신설 (인재개발원) - 시세 세원발굴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루 누락의심이 많은 법인에 대한 직접조사 실시 - 시·자치구 협업을 통한 시세 세원 발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세무조사 및 자치구 지도점검 강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시 세입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앙 정부의 8.2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적 대응 노력을 강구하고, 금년 세입추계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장이 국무회의 참석 시 차후 대응방안을 건의할 것.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세입 환경 지속적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 및 시장 동향, 금리 인상, 국세 증감 등 ○ 정부정책 발표 시 세입 증감 등 세입 영향 분석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전망, 목표달성 가능성, 향후 추이 등 ○ '18년 세입징수 종합대책 추진계획 수립('18.4.9 부시장방침) ○ '18년 시·구 합동 세입징수 종합대책회의 실시('18.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행정1부시장,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25개 자치구 재무국장 - 안건 : '17회계년도 시세입평가 우수자치구 시상 및 '18년 시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시·자치구 대책회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세입징수 대책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상하반기 각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구청장 주재 및 재무국장 주재 대책회의 추진 및 실적 보고 ○ 중앙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과 연계한 부동산 대책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등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추진 예정
<p>○ SH공사에 위탁한 관리업무의 계약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고할 것, 특히 시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축소와 무단점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시유재산 위탁관리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관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 평가기간 : '18.1~4월 - 평가내용 :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수입증대 및 재산관리 분야 - 평가결과 : 80.71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조직담당관) 3년 평균 : 80.66 ○ 시유재산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18.6.30)에 따른 재위탁 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18.5.29)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수탁기간 : 2018.7.1.~2021.6.30. ○ 시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 적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밀실태조사 실시 계획 수립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유재산 적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밀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 사업기간 : '18.6~1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체 사옥 매입과 관련하여, 감사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미흡함. 특히, 누적 적립금의 과다금액을 활용한 사옥 매입 추진과 관련하여 적립금의 축소를 통해 개선이 필요함. 정부와 지자체 출연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이 부동산 투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게 필요성이 덜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문제 있음. 이는 총 적립금액이 78억원으로 크게 초과하고, 서울시의 출연비율을 축소해 달라는 개선 건의안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매우 부적절함. 따라서 출연비율을 대폭 인하토록 적극 추진할 것.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출연금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인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부칙으로 시행시기의 단계적 도입(0.015%→0.01%) 건의 (행안부 세정과장회의 '18.2.6, 시도 지방세정협의회 '17.10.11) ○ '18.2월 이사회에 선임감사 의견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 및 지자체 출연금 부담의 개선방안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의 출연비율 인하 개선과 관련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타지방자치단체와 전략적 공감대 형성 ○ 출연비율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개발 추진
<p>○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한꺼번에 미교부단체로 지정되어 재정자립도 낮은 자치구는 손해일 수 있음. 또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공약으로 서울시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타 시도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정부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분권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내 '범정부 재정분권 TF' 운영 종료('17.11월~ '18.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지방세 구조, 지방교부세 개편,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포괄적으로 논의 - TF 안에 대해 중앙부처(행안부, 기재부)간 이견 존재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18.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개편안 마련(~19년), 국제·지방세 합리적 조정(~'22년) 등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시가 타 시도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획조정실과 「재정분권 TF」 공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0월 ~ '18.3월 : 총 9회 개최 - '18년 TF 확대 운영(재정분권 TF 단장 : 금재덕 교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합의안에 맞추어 우리시 적기에 즉각 대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과세쟁점자문단은 모두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과세 쟁점자문단에 외부위원 참여를 검토해 주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쟁점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사항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부실과세 방지 및 신속한 의사결정 도모 - 법령·판례 및 예규에 반하는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 외부위원 참여시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에 따른 과세예고에 불복하는 경우 외부위원이 포함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므로, - 과세쟁점자문단에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중복 우려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쟁점자문단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하되,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 결정
<p>○ 과오납 중 납세자의 착오로 발생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 부과할 때 잘되거나, 세금제도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중요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검토 후 보완하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적정하게 적용하도록 사전 정비계획 수립 · 시행 ○ 부실과세 방지 및 불복 청구 시 승소방안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과세 방지 -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 불복 제기 시 시·구간 공동 대응 등 ○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방안 적극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및 자치구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워크숍 실시 - 인재개발원을 통한 취득세 및 소득세 등 주요세목 교육 - 지방세관계법 개정 또는 행안부 지침 통지 시 세목별 교육실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분 과세 전 담당자 교육, 인재개발원 교육 등 강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만9,322명 (9410억 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3%가 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서울시의 취득·등록·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공과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율 전국 17개 시·도 중 4년 연속 16위를 기록함. 지속적이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징수비율과 체납 지방세 추징비율 재고 등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하여 부족한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체납징수율 향상을 위해 체납관리 종합계획 수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검찰고발 확행,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 강화, 체납자 가택수색 및 언론 홍보 강화 ○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법정 납부기간 경과 후의 납부기간(1개월) 제도를 폐지('16.9.)하여 독촉 및 압류시기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촉시기 단축(2개월 → 1개월)으로 조기 채권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전) 납기경과 후 2개월 되는 날 독촉 시행 ▶(시행 후) 납기경과 후 10일까지 수납확인, 15일까지 독촉 시행 - 기관별 세외수입 전담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18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 계획 수립: '18.2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징수액 증대 및 불합리한 법령개정 등 다양한 징수방안 마련 시행
<p>○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서울시 세금의 대부분을 징수 하고 있는 자치구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징수포상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 징수포상금 기본공제액 폐지 및 지급율 하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기본공제의 공제항목 폐지 - 지급율 하향 및 한도액 설정으로 과도한 포상금 지급 제한 ○ 소송승소로 체납금 징수시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한도(월1백만원) 배제,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 ○ 세무조사공무원의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의 지급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탈루세원→1년 이상 - 취득세 한정 → 신고납부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제출: '19.2월중

건의 사항

건의 사항	조치 결과
<p>○ 내년도 예산에 단지 세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이 불투명한 서울의료원 매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운영을 왜곡하고 행정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임. 행정자치위원회 등 의회 의견수렴을 요구함.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현대차부지 개발이 본격 진행 중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17년 대비 다소 높아질 수 있는 시장상황 형성이 전망되는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의료원 부지를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년 매각수입 예산을 편성한 것임 ○ 2018년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행자위 및 예결특위 사전 보고 및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의결 등을 이행하였음
<p>○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개별 소비세 신설로 594원을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있는데 이 세금을 지방재정으로 돌려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의뢰: '17.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소비분 등 개별소비세 중 지방세로 적합한 대상에 대한 연구 ○ 2018년 상반기 연구과제로 채택, 연구 진행 추진: '18.1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 개정 건의 ○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협의회, 타 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개선 건의
<p>○ 청년세 신설에 대해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 의뢰 및 2018 업무보고시 보고해 주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 의뢰: '17.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세 도입 타당성, 재원근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 도입방안 및 예상효과 ○ 2018년 상반기 연구과제로 채택, 연구 진행 : '18.1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 개정 건의 ○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협의회, 타 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개선 건의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서울시 시유지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 없이는 동상 건립 불가함을 입장 표명해 주기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관리과) 해당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 부서에 공유재산 관련 법령 준수 및 관리 철저 촉구: '17.11.10. ○ (임대주택과) 해당 시유지는 상암 택지지구 내 위치한 부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행위허가 및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통보(서울시 → 박정희기념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15. : 재단 측 심의서류 마포구청에 접수 - '18.1.31. :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신청 <p style="text-align: center;">(재단 측 심의서류 보완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결과 및 행위허가 신청 결과 통보
<p>○ 근로자납세조합의 국세는 차등 적용, 지방세는 5%로 일률 적용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차등 적용토록 건의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관 등의 근로소득자로 구성된 납세조합은 2%로 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국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적용 ○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기타 납세조합 등은 영세성 및 세원포착의 어려움을 고려, 현행 5% 유지 ○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교부율 차등 적용 행안부 건의: '18.2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주관 '18년 지방세법 토론회 안건 제출 및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2차 안건 심사 결과 국세와 동일하게 2% 유지(하향)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과세쟁점자문단 연도별 구성현황, 운영실적 (세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7)
○ 지방세 상위 체납 업체 결손 처분 현황 (38세금징수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7)
○ 고액체납자 내역 (금액순위별로) (38세금징수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9)